

##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
----------	----

제출년월일 : 1998.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계안이유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여성·근로자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으로 조정하고, 행정변화로 인한 부분적인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물가담당국장을 제외한 5명을 위촉직으로 조정하고
- 정부가 결정하는 의보수가와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상수도료 등을 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심의대상중 인상조정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 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 하였으며
-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음.

의안전문 :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4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관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 요금 (단, 산업자원부 도시가스요금연동제시행 지침에 의한 원료비 조정시는 제외)
2.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③ 제2항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도의 경제통상국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도의회 의원, 소비자·근로자·여성대표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분기1회”를 “연1회”로 하고, 제9조 제3항중 “공업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간사는 소비자보호담당사무관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